

## 1. 개정이유

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첨단무기체계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방위산업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방위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9790호, 2023. 10. 31. 공포, 2024. 5. 1. 시행)됨

이에 따라,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착수금 중도금 관련 용어정의 보완
- 나. 착수금 중도금 지급대상 정비
- 다. 착수금 중도금 지급규정 정비
- 라. 착수금 중도금 채권 보전 규정 정비
- 마. 기타 방위사업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 보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    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20. ~ 4. 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방위사업법」 제46조제3항의”를 “「방위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6조의2 및 「방위사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61조의9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호(종전의 제1호) 중 “「방위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”을 “법 제3조제15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사업계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(종전의 제2호) 가목 중 “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”을 “법 제3조제15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사업계약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다른 방산업체”를 “업체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“방위사업계약”(이하 ‘계약’이라 한다.)이라 함은 법 제3조제15호의 방위사업계약을 말한다.
6. “계약금액”이라 함은 단기계약에서는 당해연도 세출예산금액을 말

하며, 장기계약에서는 총 계약기간 동안 연도별 세출예산금액의 총 합계금액을 말한다.

제4조제4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④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9 제5항 및 제6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다. 이 경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한도액은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조제4항 단서 중 “그 계약이행기간”을 “납품지체 및 수정계약 등으로 인한 계약이행기간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었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 |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방위사업법」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(着手金) 및 중도금(中途金) 지급의 기준·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방위사업법」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(着手金) 및 중도금(中途金) 지급의 기준·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조(목적) ----- 「방위사업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6조의2 및 「방위사업법 시행령」 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61조의9 -----<br>-----.       |   |   |
| 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br>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1. “착수금”이라 함은 「방위사업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전에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 | 1. “착수금”이라 함은 「방위사업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전에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 | 1. “방위사업계약”(이하 ‘계약’이라 한다.)이라 함은 법 제3조제15호의 방위사업계약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2. “중도금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----- 법 제3조 제15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사업계약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----- 법 제3조 제15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사업계약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 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
가.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관 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의 자금지출이 착수 금을 초과하여 사용된 것 이 확인된 후 계약상대자 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 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 급되는 금액

나. (생략)

3. “협력업체”란 계약상대자에 게 원자재(소재 및 부재를 포 함한다) 또는 중간재를 공급 하거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다른 방산업체 등을 말한다.

4. (생략)

<신설>

제4조(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 준·방법) ① ~ ③ (생략)

④ 계약상대자가 「국가를 당사

가. 법 제3조제15호 중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어느하나 에 해당하는 방위사업계약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업체 -----.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6. “계약금액”이라 함은 단기계 약에서는 당해연도 세출예산 금액을 말하며, 장기계약에서 는 총 계약기간 동안 연도별 세출예산금액의 총합계금액을 말한다.

제4조(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 준·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 음)

④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

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계약 상대방이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(이하 “방위사업계약”이라 한다)과 관계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에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(제7조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하기 전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)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
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9 제5항 및 제6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다. 이 경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한도액은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<삭 제>

⑥ ~ ⑧ (생략)

제5조(지급한도액) ① (생략)

②착수금의 지급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계약상대자의 착수금 지급 청구 시마다 그 청구일부터 360일 이내의 기간 중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착수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정하여진 사용기간보다 조기(早期)에 사용한 후 그 사용실적과 추가 착수금 사용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착수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6조(채권보전) ① ~ ③ (생략)
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,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지급한도액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. <단서 삭제>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채권보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다. 다만, <u>그 계약이행기간</u>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 | <p>--. --- <u>납품지체 및 수정계약</u><br/> <u>등으로 인한 계약이행기간</u>-----<br/> -----<br/> -----<br/> -----<br/> -----.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